

分配理論 서베이 : 其一*

—分配的 正義의 探索—

李 俊 求**

<目 次>

- I. 머리말
- II. 傳統的인 諸思潮
- III. 룰즈의 分配的 正義觀
- IV. 哲學과 經濟學
- V. 맷음말

I. 머리말

우리가 어떤 分配의 狀態를 놓고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상태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바람직한 분배의 상태에 관한 原則의 設定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이러한 분배의 상태가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만 그것에 비추어 현실의 분배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尺)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原則은 規範的인 問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 社會의 構成員이 意見의 一致를 보이게 되리라는 것은 아무리 同質的인 社會라 할지라도 기대되기 힘든 일일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 바람직한 分配의 像은 어떤 明白한 原則으로서가 아니라 막연한 생각의 형태로서 보유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중에서 유독 分配의 問題에 대해서만은 百家爭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도 이같은 原則의 多樣性, 模糊性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分配의 問題에 대한 本格的인 思惟의 出發은 과연 어떤 分配의 狀態가 바람직한 것이냐를 定立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哲學者들은 바람직한 分配의 문제를 “正義(justice)”라는 개념과 결부시켜 성찰해 왔다.

* 이 論文은 1987年度 文教部 自由公募課題 學術研究造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즉 이 문제는 “分配的 正義(distributive justice)”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물음의 형태로 道德哲學이나 社會哲學의 일부로서 논의되어 온 것이다. 分配的 正義에 관한 最初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倫理學(Ethica Nicomachea)』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각자가 가진 價值에 比例하는 分配, 바꿔 말하면 각자의 社會的 寄與에 비례하는 분배가 바로 正義로운 分配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의 뒤를 이어 現代의 롤즈(J. Rawls)나 노직(R. Nozick)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哲學者들이 分配的 正義의 探索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꽤 짜임새있는 理論들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論文의 主要한 目的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제시된 分配的 正義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整理하고 이들을 比較·評價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에 도움을 주고자 힘에 있다.

우리는 分配的 正義란 개념을 넓은 意味와 좁은 意味의 두가지로 해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分配的 正義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모든 便益(benefits)과 負擔(burdens)이 社會의 構成員 사이에서 분배되는 것과 관련된 正義를 뜻하게 된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에서의 分配的 正義란 經濟的인 것에 국한된 便益과 負擔의 분배와 관련된 正義를 뜻한다. 따라서 이 개념이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自由나 參政權같은 非經濟的 價值의 분배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며, 반면에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순수히 物質的인 것의 분배에만 국한하게 된다.⁽¹⁾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주로 物質的인 것의 분배와 관련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分配的 正義로 논의를 한정시키기로 한다.

分配的 正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서로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란 다음 네 가지 要素를 포함하는 複合的인 概念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哲學者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의 첫번째 要素는 “權利(rights)”이다. 어떤 분배의 상태가 正義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 어느 누구의 正當한 權利도 침해되지 않고 있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正當하게 받아야 할 것이 拒否되거나 혹은 그로서는 지지 않아도 되는 負擔을 떠맡도록 強制되고 있다면, 그의 正當한 權利가 무시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便益과 負擔의 分配가 결코 정의로울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正義로운 分配의 두번째 要素는 “公平性(fairness)”이다.⁽²⁾ 우리의 言語習慣에서 “正義로

(1) 物質的인 것의 구체적 형태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所得이나 財產을 생각할 수 있다.

(2) J. J. Arthur and W. Shaw(1978)가 지적하듯이 무엇이 公平하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公平하다는 것에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운 分配(just distribution)"와 "公平한 分配(fair or equitable distribution)"의 差異를 뚜렷하게 分간해 내기 힘들다는 사실은 正義라는 개념에 있어 公平性이 얼마나 莫能적인 요소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³⁾ 말하자면 사람들은 正義로운 분배라고 하면 곧바로 公平한 분배를 연상할 만큼 正義에 있어서의 公平性의 비중이 큰 것이다.

세계로 正義로운 分配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同一한 道德的 價値를 보유하는 存在들이란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外樣이나, 能力 혹은 背景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皮相의 差異 때문에 本質의 道德的 價値마저 달리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⁴⁾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 안의 物質的 價値에 대해 基本적으로 同等한 權利를 가져야만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⁵⁾

正義로운 분배의 마지막 네번째 要件는 "받을만한 資格(desert)"에 따른 便宜과 負擔의 분배이다. 어떤 특정한 분배상태하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별달리 그럴만한 資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莫大한 富를 득차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한 正義로운 분배의 要件들이 이미 만족되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관계없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正義感은 심히 損傷될 수 밖에 없다. 각자가 받을만한 資格이 있는 범위내에서 物質的 價値를 소유하게 되는 분배가 아니고서는 정의로운 분배라고 인정받을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런데 이같이 "받을만한 資格"이 있다, 없다는 무엇에 의해 판가름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딱 질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能力"의 많고 적음에 의해 판가름되어야만 한다고 하자. 더 많은 能力を 가진 사람이 더 큰 富를 차지할 資格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否定하기는 어렵지만, 能力만에 의해서 그 資格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자극히 드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을만한 資格을 결정함에 있어 "努力"도 能力에 끗지않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반

은, 비슷한 경우를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 즉 不偏不黨하고(impartial), 일관된(consistent)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公正性이란 말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듈다.

(3) J. Rawls는 公平性과 正義의 관계가 마치 우리가 흔히 쓰는 "隱喻로서의 詩(poetry as metaphor)"라는 표현에 있어서의 隱喻와 詩의 관계와 흡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4) 個人으로서의 道德的 價値는 모든 사람에 있어同一하며 따라서 社會의 正義는 이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제시한 예로서는 G. Vlastos(1962)를 참조하라.

(5) W. Frankena(1962)는 이 논리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平等性이란 단순히 비슷한 사람을 同等하게 취급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을 同等하게 취급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正義는 어떤 특별한 고려에 의해 不平等한 취급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모든 사람을 同等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을만한 資格이란 결국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의 物質的 價值의 創出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보다 뛰어난 능력과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일수록 보다 큰 富를 소유할 資格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볼 때, 社會에 대한 寄與는 과히 크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보다 큰 “物質的 必要”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必要에 의해서 받을만한 資格이 正當化 될 수 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즉 “받을만한 資格”이라는 것은 能力과 努力뿐 아니라 必要라는 요소에도 의존하여 규정될 수 밖에 없는 複合的 概念인 것이다. 그러므로 받을만한 資格에 의거하여 분배하는 것이 正義다는 원칙에는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받을만한 資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異見을 보일 소지가 다분히 있다.

正義로운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네 가지 要件, 즉 權利, 公平性, 平等性 그리고 받을만한 資格의 要件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要求 그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네 가지의 要件을 分配的 正義라는 하나의 概念으로 溶解시키고자 할 때, 서로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그 중 어떤 것이 부득이 포기되어야 하는 경우가흔히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個個人의 正當한 權利가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平等性을追求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므로 결국은 兩者擇一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相衝可能性은 비단 이例外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이처럼 分配的 正義를 위한 네 가지의 要件이 두루 충족될 수 없는 것이 보다一般的인 現實의 狀況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점은, 과연 어떤 것에 보다 큰 比重을 두어 正義를 규정해야 하는가라는 選擇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 選擇의 問題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正義의 實體를 파악하는 일은 항상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우리의 關心의 對象이 되는 “正義(justice)”라는 道德的 價值가 이 세상의 唯一한 價值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며 많은 道德的 價值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제는 正義라는 道德的 價值가 때때로 다른 종류의 道德的 價值와相衝된다라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自由(liberty)”는 正義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道德的 價值라고 할 수 있는 바,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를追求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사람들의 自由를 침각하게 危脅할 수 있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相衝하는 여러 道德的 價值중에서 유독 正義에게만 다른 것에 優先하는 絶對的 地位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같은 相衝可能性은 항상 문제를 유발시킬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分配的 正義를 찾기 위한 探索이 그 오랜 歷史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成果 없이 空轉을 거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의 要諦라 할 수 있는 正義라는 개념이 여태 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內的・外的으로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질 수 있다. 正義를 구성하는 要素들의 相衝可能性을 극복하고 正義의 實體를 確立하는 동시에, 나아가 이것이 다른 諸價値와 相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극복해야 하는 二重의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자연스런 反應이 바로 “直觀主義 (intuitionism)”이다. 直觀主義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明白한 規則이 아니라 우리의 直觀에 의존함으로써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分配的 正義의 實體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直觀에 全的으로 의존한다 함은 共同的인 개념으로서의 正義를 確立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筆者는 다음 章에서 分配的 正義에 관한 諸理論 혹은 思潮를 정리하고 이들을 비교・평가하면서 이들이 어떤 方向으로 直觀主義의 誘惑을 克服하고 있느냐를 밝히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그러나 本論文은 단순히 分配的 正義를 둘러싼 哲學界에서의 논의를 概觀하는 데에서 끝맺음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經濟學者로서의 우리의 관심은 哲學的 論議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더 크게 이것의 결과를 政策原理로 전환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經濟的 現實과는 전혀 동떨어진 채 진행되는 哲學的 論議의 결과를 아무런 수정없이 그대로 經濟政策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⁶⁾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哲學的인 分配的 正義論을 經濟學者의 입장에서 비판・검토하고, 이의 적절한 受容方案을 강구하는 일이다. 本論文의 두 번째 主眼點은 바로 여기에 두어질 것이다.

本論文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論議를 進行시키고자 한다. 우선 다음 章에서는 分配的 正義에 대한 傳統的인 세 가지의 주요한 理論 혹은 思潮—平等主義의 思潮, 自由主義의 思潮, 그리고 功利主義의 思潮에 대해 정리하고 이들을 상호 비교하고 검토하는 일을 하게 된다. 第三章에서는 現代의 分配的 正義 分野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룰즈(J. Rawls)에 관해 고찰하려고 한다. 한個人의 分配的 正義觀에 구태여 그와 같이 많은 紙面을 할애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룰즈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現代哲學에 있어서의 분배적 정의론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戰略的 利點이 이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실 노지(R. Nozick)의 自由主義나 스마트(J.J.C. Smart) 혹은 하사니(J. Harsanyi)등의 功利主義는 룰즈와의 대비를 통해 그 입

(6) J. Arthur and W. Shaw(1978)는 分配的 正義의 논의가 經濟現實과는 獨立的으로 행해져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哲學的인 입장에서 볼 때는 經濟現實과 결부시켜 正義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第四章에서는 여태 까지의 哲學的 論議를 分配와 관련된 政策遂行의 理念의 土臺로 전환시키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따라서 이 章에서는 筆者의 經濟學者로서의 見解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마지막 章은 간단한 맷음말로 논의의 마감을 하려 한다.

II. 傳統的인 諸思潮

머리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라는 概念은 여러가지 原則들을 포함하는 複合的인 概念이다. 따라서 이 原則들 사이에 어떤 優先順位를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見解의 差異가 바로 하나의 思潮를 다른 것과 구분지어주는 因子가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平等主義(egalitarianism)는 正義의 여러 요소 가운데 平等性(equality)에 압도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思潮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조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個人的 權利가 尊重되어야 한다든가, 모든 사람이 公平한 待遇를 받아야 한다든가, 혹은 받을만한 資格에 比例하여 뜻을 나눠야 함이 중요하지 않은 고려라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同等한 權利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의 중요성에 비하면 이러한 것들은 잘해야 副次的인 意味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自由主義(libertarianism)에 있어서는 個人的 權利나 自由가 다른 무엇에도 優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를 侵害하는 어떠한 行爲도 다른 이유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自由主義者들은 말하는 것이다. 功利主義(utilitarianism)의 경우는 약간 독특하여 平等性, 權利 혹은 自由같은 것은 뒷전에 밀린 채 “社會全體의 厚生”이라는 尺度로 正義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를 分配的 正義에 관한 논의를 傳統的으로 支配해 온 主要한 思潮라고 할 때,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思潮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正義를 구성하는 마지막 要素, 즉 받을만한 資格(desert)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正義觀도 위의 것들에 끗지 않는 큰 影響力を 가져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一貫性있는, 獨立的인 思潮라고 부를 수 있기에에는 그 體系化의 정도가 너무나 미흡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어떤 사람의 받을만한 資格을 결정지워주는 요소로서 能力뿐 아니라 努力이나 必要등 다른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資格을 重視하는 방향으로 쓰인 글 가운데 이들 상이한 요소들이 어떤 原則하에서 統合됨으로써 받을만한 資格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게 되는가에 대해 體系的인 思惟를 보이고 있는 것을 거의 발견

할 수 없다.⁽⁷⁾ 보다 본질적으로는 받을 만한 資格에 比例하는 分配가 왜 正義로운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論證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正義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과 그것이 가진 說得力이 작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아래에서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주요한 傳統的 思潮에 焦點을 맞춰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1. 平等主義의 正義觀

여태까지 우리에게 제시된 각양각색의 分配的 正義觀 중 平等主義의 것처럼 直接的이고 廣範한 呼訴力を 가진 것은 드물 것이다. 몇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들먹일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時代에 걸친, 수 많은 사람들의 支持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平等主義의 基本的 出發點은 모든 사람이 平等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감히 否定하기 힘든 命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감히 부정하고 사람들이 不平等하게 태어났음을 주장한다면 그는 이를 立證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된다. 사실 적지 않은 數의 사람들이 무모하게도 不平等함을 立證하려 했지만 결국 失敗로 돌아가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平等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그 사실을 分配의 正義의 核心에 놓아야 할 當爲까지 자동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平等性은 正義를 構成하는 여러 要素중의 하나로서, 그 重要性은 다른 요소와의 相對的 聯關하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平等主義에서와 같은 平等性의 지나친 強調는 正義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副次的인 位置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연 이것이 正當化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지극히 세심한 논의를 거친 후에 라야만 판가름될 수 있을 것이다.

平等主義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平等性을 強調하는 나머지 正義의 또 다른 요소, 즉 個人的 正當한 權利를 輕視하는 데 있다고 자주 지적되고 있다. 만약 個人的 權利가 侵害받지 않고서도 平等性의 實現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平等性에의 要求가 필연적으로 個人的 權利를 侵害할 수 밖에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 相衝可能性은 매우 큰 정도로 존재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兩者擇一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平等主義者들과는 반대로 個人的 權利를 選擇했던 것이다.⁽⁸⁾ 平等主義者들이 안고 있는 무거운 부담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平等性이

(7) 이러한 方向으로의 글의 예로서는 M. Lessnoff(1978), J. Rachels(1978), 그리고 N. Daniels(1978) 등을 들 수 있다.

(8) 그 단적인 예가 조금 뒤에 설명할 自由主義者들이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個人的 權利가 바로 正義의 要諦를 형성하고 있다.

優先해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論證하는 일이다.⁽⁹⁾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일에 있어 평등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거둔 成果는 과히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平等主義가 암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平等性에의 要求가 自由라는 또 다른 道德的 價值와는 相衝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正義의 要諦가 平等性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빠찬 터에, 이것은 그만 접어준다 하더라도 正義와 自由의 두 道德的 價值 사이에서 왜 正義가 優先해야 하는가를 또 다시 論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平等主義者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만약 우리가 自由라는 개념을 보다 積極的인 意味로 해석한다면 正義와 自由가 반드시 相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응수하고 있다. 傳統的인 自由의 개념, 특히 自由主義者들이 갖고 있는 自由의 개념은 남에 의해서 強制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의 自由이다. 平等主義者들은 이러한 消極的인 의미에서의 自由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되지 않는 돈을 마음대로 쓸 自由를 부여받고 있다해서 그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反問하고 있다. 그는 쓸 수 있는 돈의 액수에 크게 制約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진정으로 自由롭지 못한 것이며, 결국 自由란 단순히 強制가 없다는 것 이상의 積極的인 의미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코헨[G. Cohen, (1978)]의 “實質的 自由(effective liberty)”란 개념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¹⁰⁾ 그는 營養失調로 말미암아 빈사상태에 있는 한 어린이에게 牛乳를 사주기 위해 어떤 百萬長者에게 租稅라는 強制的 手段을 적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強制的手段이 그 百萬長者の 正當한 所有權과 人格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아마도 소수의 過激한 教條的 自由主義者를 빼놓고서는 감히 그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強制的인 租稅의 부과 때문에 몇몇 사람의 消極的 自由를 구속하는 결과를 빚을지 모르나 社會全體의 實質的 自由는 增大된다는 점에 대부분이 공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自由란 개념을 반드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느냐는 그 자체도 哲學的 論爭의 對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平等主義者들에 있어서 平等性으로 대표되는 正義의 原則과 自由의 原則 사이에 생길 수 있는 相衝可能性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9) 물론 반대로 自由主義者들도 個人的 權利가 우선해야 하는 이유를 立證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10) G. Cohen의 正義觀은 구태여 분류해보자면 社會主義의 平等主義라고 부를 수 있다.

여태까지 설명해 온 바와 같이 平等主義의 分配的 正義觀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平等하게 태어난 이상 모든 物質的 價值 역시 平等하게 分配되는 것이 正義를다는 생각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런데 “平等하게 分配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선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價值있는 物件들을 각 사람에게 똑같은 양으로 분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分配가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는 제쳐두고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마다 모두 嗜好가 다르고 必要 역시 다른 터에 모든 물건을 각각 똑같은 양으로 나누자는 주장에 누가 수긍하겠는가? 아무리 강한 平等主義의 性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極端의平等이 正義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平等이란 말을 어느 정도 탄력성있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을 똑같은 量으로 가지기 보다 다만 누리고 있는 經濟的 厚生의 水準만 같다면 平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혹은 經濟的 厚生이란 것이 그 主觀性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所得이나 財產을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서 平等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能力, 努力, 그리고 必要가 다른 터에 所得이나 財產을 일률적으로 똑같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¹¹⁾

平等이란 개념을 한층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最小限의 生活水準(minimum standard of living)”에 대해 同等한 權利를 갖는 것으로서 平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자는 이것이 너무 微溫的인 平等이라 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같이 탄력적인 해석은 너무 극단적인 平等이 갖는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最小限의 生活水準”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단지 衣・食・住라는 인간의 生物的 要求만을 포함시켜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 社會에서 떳떳한 市民으로서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文化的 要求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明白한 基準이 제시된 바 없다. 나아가 文化的 要求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最小限의 生活水準에 대한 同等한 權利로서 平等을 해석하고 이에 입각하여 正義로운 分配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

(11)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매우 平等主義의 性向이 강할 것 같은 K. Marx나 F. Engels 같은 사람조차도 이러한 분배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調整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장해주고 남는 것의 분배에 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점이다.⁽¹²⁾ 그렇다면 남는 經濟的 資源을 모두 한 사람이 독차지하게 될 때도 正義로운 分配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답은 물론 강한 否定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남는 資源의 平等한 分配와 관련된 또 다른 原則으로 補強되지 않는다면 正義의 原則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平等한 分配라는 개념은 또한 모든 사람이 “同等한 機會(equal opportunities)”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同等한 機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유독 平等主義에만 固有한 특징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自由主義나 功利主義의 正義觀 모두가 正義로운 분배의 기본요건으로서 同等한 機會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렇지만 같은 “同等한 機會”라는 말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나에 따라 그 具體的內容은 크게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平等主義에 고유한 解釋上의 特徵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急進의 平等主義者로 볼 수 있는 닐슨[K. Nielsen (1978)]은 기회의 평등을 同等한 自由와 同等한 自尊心 내지는 道德的 自主性(moral autonomy)을 보장해 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所得과 財產의 偏重은 인생에 있어서의 展望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相異한 階級을 設立적으로 만들어 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階級의 존재는 機會의 平等을 원천적으로 不可能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닐슨은 결국 必要나 嗜好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調整은 인정하나 기본적으로 均等한 所得과 財產의 分配가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機會의 平等과 소득이나 재산의 平等한 分配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機會의 平等에 대한 해석의 평등주의적인 특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自由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教育받고 經濟生活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自由主義의 機會의 平等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¹⁴⁾

모든 인간은 平等하게 태어난 것이고 따라서 모든 物質的 價値는 平等하게 分配되어야 한다는 명제의 直觀力呼訴力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平等主義의 正義觀이 각계각층의

(12) 한 사회의 生產物의 總量이 모든 구성원에게 最小限의 生活水準을 보장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이다. 만약 고루 分配되기만 한다면 아무리 가난한 사회라 할지라도 이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3) 예를 들어 所有의 差等을 인정하고 政府는個人의 財產權 保護를 본래의 任務로 삼아야 한다는 典型의 自由主義의 見解의 소유자인 J. Locke도 機會의 平等이 보장되어야 하는 당위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14) 自由主義者들은 이 수준의 機會의 平等만 보장된다면 더 이상의 平等을 위해 政府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일단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후 市場의 힘에 의해 생긴 不平等은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경우의 기회의 평등은 지극히 消極的의 의미에서의 平等이다.

평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가 무엇인가를 엄격하게 논증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직관적 호소력을 넘어서는 엄밀한 論理가 필요함이 분명하다. 여태까지의 논의는 平等主義가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의 측면에서 試驗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첫째로, 正義를 구성하는 여러 要素中 哪 平等性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優先해야 하는가를 論證해야 한다. 둘째로는 여러가지의 道德的 價值中에서 正義가 다른 것에 優先해야 함을 論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平等한 分配의 具體的 内容이 무엇인가를明白한 基準의 제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분배에 있어서의 正義에 대한 哲學的 理論으로서의 평등주의의 成敗는 바로 이 세 가지試驗에서 어떤 評價를 받을 수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筆者의 견해로는 平等主義가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평등주의의 論理的 說得力이 아직까지는 未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改善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등주의를 全面적으로 拒否한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정도의 문제점은 다른 모든 分配的 正義의 思潮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自由主義的 正義觀

自由主義的 正義觀 역시 平等主義의 正義觀에 못지 않게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思潮이다. 롤크(J. Locke), 몽테스큐(B. Montesquieu), 칸트(I. Kant), 스미드(A. Smith)등 수많은 이름들이 自由主義와 결부될 수 있음만 보아도 안다. 自由主義의 正義觀의 要諦는 모든 사람이 正當하게 가질 權利가 있는 것들만을 소유하는 分配의 狀態가 正義로운 것이라는데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正義의 여러 要素中 權利가 가장 優先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正義라는 이름 아래 個人의 自由가 侵害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自由主義의 입장은 政治的 측면에서는 대개 保守的 性向으로 나타나게 되어 平等主義의 입장을 강하게 받는 進步的 性向에 맞서게 된다.

自由主義의 正義觀이 파력되고 있는 현대의 저작으로서 하이에크[F. Hayek (1976)]나 프리드만[M. Friedman (1962)]등 상당히 많은 수의 것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주장 이상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고, 오직 노직[R. Nozick (1974)]에 있어서 가장 權威 있고 體系的인 自由主義의 解說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力作 *Anarchy, State and Utopia*에 제시된 그의 분배적 정의관은 自由主義의 입장의 典型으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노직은 사람이 단순히 手段으로서만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目的 그 자체여야만 한다는 칸

트의인 原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個人的 權利는 어떠한 경우에도 侵害될 수 없으며, 本人의 同意가 없이 어떤 目的의 달성을 위해 회생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어느 누구도 社會全體를 위한다는 美名아래 다른 사람을 이용할 權利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며, 하물며 國家나 政府는 그런 권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출발은 자연 그로 하여금 “最小限의 政府(minimal state)”가 正當화될 수 있는 한의 가장 廣範한 (extensive) 政府라는 입장을 취하게 만든다.⁽¹⁵⁾ 그에 의하면 이 以上으로 活動의 領域을 넓히려는 어떠한 시도도 펼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侵害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正當化될 수 없다.

노직은 分配的 正義를 달성시킨다는 명목으로 政府가介入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는 “分配的 正義(distributive justice)”란 용어 그 자체가 中立의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分配”라는 말에 접하게 될 때면 의해 어떤 물건들을 나누어 주는 메카니즘을 연상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뉘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할 權限을 부여받은 個人이나 集團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가 교환을 통해 그것을 획득했다거나 혹은 贈與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分配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노직은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分配的 正義”란 용어의 사용을 止揚하고 “所有에 있어서의 正義의 原則(principles of justice in holdings)”이란 中立的 用語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직의 正義觀은 “正當한 權利의 原則(entitlement principles)”에 克明하게 압축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 원칙은 取得(acquisition)에 있어서의 正義의 原則, 移轉(transfer)에 있어서의 正義의 原則, 그리고 不正義의 是正(rectification of injustice)에 관한 原則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어떤 사람이 取得에 있어서의 正義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법을 통해 어떤 물건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正當하게 가질 權利가 있다(be entitled to)”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떤 물건을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移轉에 있어서의 正義의 原則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역시 正當하게 가질 權利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어느 原則에도 의거하지 않고 생성된 所有權은 正當性이 없다. 노직에 있어서의 正義로운 分配는 모든 사람이 正當하게 가질 權利가 있는 것만을 所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15) 最小限의 政府란 古典的 自由主義에서의 夜警國家觀과 상응하는 것이며, 政府의 기능을 폭력, 절도, 사기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고 계약의 이행을 監督하는 등으로 最小化시킨 상태를 지칭한다.

노직은 자신의 原則을 自由主義나 功利主義의 원칙과 대비시켜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우월함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歷史性이 있느냐의 여부이고 두번째는 어떤 경해진 패턴에 따라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나 아니나의 여부이다. 어떤 분배의 상태를 評價할 때 단지 결과로서 나타난 상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고 지나온 過程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歷史性이 요구되는 것인데 오직 자신의 원칙만이 이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리 경해진 패턴에 따라 분배하고자 할 때 반드시 再分配가 필요하게 되고 이때 個人的 權利가 侵害되게 되는데, 이 점에서 볼 때 역시 자신의 원칙만이 공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노직은 結果에 있어서의 正義보다 節次에 있어서의 正義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가 얼마나 廣範한 支持를 끌어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結果에 있어서의 正義가 보다 實質的인 正義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個人의 正當한 權利와 自由는 다른 어떤 價值와도 맞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自由主義의 口號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自由主義者들의 선명한 論理와 유려한 修辭은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입을 벌릴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그들의 주장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들은 앞에서 설명한 平等主義者들과 방향만 다를 뿐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안고 있는 부담은 個人的 權利와 自由가 왜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는가를 論證하는 일이다. 자유주의자 역시 이 일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自由主義者들에게 갖는 印象이 “獨善의이며, 가진 者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은 이 점을 잘 밀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自由主義의 正義觀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不滿은 그것이 節次上의 形式的인 正當性만을 강조하는 나머지 分配의 實質的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는 점에서 나온다고 보여진다. 자유주의에서 묻는 것은 오직 正當한 方法에 의해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느냐의 여부이며, 이 正當性만 보장된다면 누가 무엇을 갖든 혹은 누가 얼마나 많이 갖든 결코 상관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모든 富가 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餓餓에 시달리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節次上의 正當性만 인정될 수 있다면 正義로운 分配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正當한 方法에 의해 분배상태가 결정될 때 이와 같이 극단적인 상태는 결코 초래되지 않는다고 반박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節次上의 正當性만이 고려되는 경우 그같이 不平等한 상

태가 초래될 가능성은 매우 큼이 분명하다. 不平等이 만들어 내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앞에 두고 節次上의 正當性이 보장됐다는 것만을 가지고 갈채를 보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또한 애로우[K. Arrow (1978)]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正當한 方法”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당한 방법으로取得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노직은 所有權에 관한 록크(J. Locke)의 견해를 이용하여,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에 자신의 勞動力이 결합될 때 정당하게 소유할 權利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經濟같이 얹히고 설친 복잡한 체계에서 이 설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¹⁶⁾

자유주의자들은 암묵적으로 政府의 干涉에 의하지 않고 自由로운 市場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 뜻을 正當한 것이라고 생각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市場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 뜻이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면으로 反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勞動價值說에 의하면 이와 같은 주장에는 일말의 正當性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자유주의자들에 동조하여 自由로운 市場機構에 의해 결정된 뜻을 正當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문제는 남게 된다. 우리가 現實에서 보는 市場은 결코 純粹하고 理想的인 市場이 아니며, 각양각색의 不完全性은 물론 政府의介入등 수없이 많은 티가 섞여있는 市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純粹한 市場의 힘에 의해 결정된 뜻이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現實의 市場에서 결정된 뜻까지 한꺼번에 正當化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政府의 잘못된 개입이 극심한 分配上의 偏重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도 市場機構를 媒介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혹은 市場 이외의 모든 社會制度가 있는 者들에게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市場의 不偏不黨性만을 강조할 수 있을까? 自由主義者들은 이처럼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자 한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들의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깊은 思慮를 발견하기 힘들다.

自由主義의 原則의 철저한 적용은 자유주의자로 하여금 반드시 現實擁護의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正義로운 方法이 무엇이냐를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힘들지라도, 많은 경우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強壓이나, 詐欺나, 不正腐敗를 통하-

(16) K. Arrow(1978)는 移轉에 있어서의 正義도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安全性에 대한 檢查를 하지 않고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파는 행위가 詐欺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 취득된 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선뜻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不正義는 즉각적인 是正이 필요함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노직 자신도 正當한 權利의 原則의 세 번째 요소는 과거의 不正義를 是正하는 것에 관한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직의 著書 어느 부분을 보아도 문제점의 나열만 볼 수 있을 뿐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발견할 수 없다. 즉 過去의 不正義를 어떤 방법으로 是正할 것이냐에 대한 具體的인 代案의 제시가 없다는 말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노직 뿐 아니라 自由主義를 자처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의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과거에 저질러진 수 많은 不正義가 아직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새로운 不正義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모든 일에서 정의가 관철될 수는 없다. 만약 自由主義者들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듯 正義의 原則에 진정으로 충실하다면 이러한 現實을 무조건 옹호하려 들 것이 아니라 냉철한 批判者の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막연히 不正義의 是正이 필요하다고 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 뚜렷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自由主義者들의 이 같은 二律背反性, 즉 자신이 제시한 원칙과 스스로의 행동에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은 自由主義 그 자체의 신빙성을 크게 低下시키고 있다. 생각해보면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二律背反性은 자유주의자들의 失策이라기보다 자유주의 그 자체가 갖는 矛盾일지도 모른다. 個人的 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既得權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過去의 不正義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既得權이 侵害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난처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엄밀한 논리로 따져보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나 현실의 애매한 상황에서는 不正義의 是正과 既得權의 保障이 상충되는 수가 종종 있게 된다.

그리나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점은 自由主義가 제시한 純粹한 正義의 理念 그 자체는 하나의 당당한 價值體系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주의를 신봉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行態에 대해서 겨누어져야 할 批判을 자유주의적 원칙에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르긴 해도 自由主義의 原則을 본래의 정신을 살려 철두철미하게 적용함으로써 생겨난 分配의 狀態에 肯定的인 評價를 보낼 사람은 의외로 많을 것이라 짐작된다. 자유주의적 원칙을 적용시킨다는 것을 단순히 政府의 干涉을 줄이고 市場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分配의 問題를 해결한다는 次元의 皮相的인 의미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물론 안된다. 社會의 모든 부분에서 自由主義가 제시한 正義의 原則이 철저히 관철된다는 의미에서의 적용이어야 할 것이다.

3. 功利主義的 正義觀

功利主義的 正義觀은 벤담(J. Bentham)의 그 유명한 詧句, “最大多數의 最大幸福(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에 集約的으로 나타나 있다. 즉 바람직한 分配란 그 사회의 總體的 厚生을 極大化할 수 있는 分배여야 한다는 말이다. 功利主義에서는 어떤 일의 緊要 and 그 일에 의해서 사람들이 받는 영향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善(goodness)과 幸福(happiness)은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들에 있어서는 사회전체의 厚生의 增減에 입각한 “功利의 原則(principles of utility)”이 唯一한 道德的 基準이 된다.

벤담(J. Bentham)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밀(J.S. Mill), 에지워드(F. Edgeworth)를 거쳐 현대의 스마트(J. Smart)나 헤어(R. Hare)로 이어지는 功利主義 哲學은 法秩序, 政治制度 혹은 社會制度의 改革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¹⁷⁾ 經濟學에 미친 영향도 작지 않아 예를 들자면 厚生經濟學이란 분야는 그 기본적 성격이 功利主義 哲學의 經濟學의 適用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강한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道德哲學 또는 社會哲學의 한 이론으로서의 공리주의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功利主義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道德과는 동떨어진 “幸福”이란 개념을 통해 道德性을 규정하려는 “功利의 原則”에 있다고 보여진다.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테지만, 그것을 善과 惡의 문제로까지 결부시키는 것은 분명히 무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듈다. 또한 공리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란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를 둘러 싸고서도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여기서의 幸福이란 말은 快樂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欲求의 充足을 의미하는가? 最大多數의 幸福을 極大化한다는 것은 한 사회의 행복의 總合을 극대화하는 것일까 아니면 행복의 平均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가?⁽¹⁸⁾ 또한 功利主義의 原則은 個別的인 “行動(act)”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개별적인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規則(rule)”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는가?⁽¹⁹⁾ 공리주의를 둘러싼 의문점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本論文의 목적이 공리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적 평가를 내리는 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 分配的 正義觀만을 고찰하는데 있

(17) 現代의 經濟學者로서 功利主義에 共感하는 글을 쓴 사람의 예로서는 J. Harsanyi(1953, 1955, 1975), K. Arrow(1973, 1978) 등을 들 수 있다.

(18) 人口가 고정되어 있는 한 兩者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可變的인 人口를 전체로 할 때는 서로 틀릴 수 있다.

(19) 이러한 점들과 관련된 論爭에 관해서는 Smart and Williams(1973), Sen and Williams(1982) 등을 참조하라.

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런데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가져오는 分配狀態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物質的 價值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골고루 나뉘어진 상태일까 아니면 소수의 수중에 獨占된 상태일까? 이 물음에 대해 한 마디로 잘라 대답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功利主義의 正義의 原則이 적용되는 與件에 따라 이런 답도, 저런 답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功利主義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平等한 分配에 일반적으로 상당히 好意的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벤담의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음미해 보자. 그는 한 사회의 幸福의 總合을 계산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한 봉으로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한 봉 이상으로 셈해져서는 안된다 (Everybody to count for one, nobody for more than one)”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國王도, 貴族도, 僧侶도, 平民도, 거지도, 도둑놈도 모두 똑같은 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平等主義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²⁰⁾

에지워드[F. Edgeworth (1897)]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平等主義의 功利主義가 피력되고 있다. 밀(J.S. Mill)에 의해서 제시된 公平한 租稅의 規則으로서의 “均等한 犠牲의 規則(equal sacrifice rule)”을 모든 사람의 限界에서의 效用의 處生이 同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에지워드는 무척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만일 모든 사람의 效用函數가 동일하고 所得의 限界效用이 체감한다고 가정할 때 政府가 필요로 하는 모든 租稅收入은 전적으로 富裕層에 대한 課稅로서 충당되어야만 均等한 犠牲의 規則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에지워드의 생각대로라면 극단적인 경우 모든 사람의 稅後純所得이 同一해져야 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

리너[A. Lerner (1944)]는 한층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功利主義의 觀點에서 最善의 分配는 均等한 分配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에지워드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의 效用函數가 同一하다는 制限의 假定이 필요치 않다. 다만 所得의 限界效用이 체감한다는 가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주어진 액수의 소득을 A, B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짐에 있어 均等하게 나눌 때 效用의 합이 極大化되는 것을 입증하였다. ⁽²¹⁾ 즉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均等한 分配가 最善의 分配라는 결론이 직접적으로

(20) 벤담의 功利主義의 社會改革의 아이디어가 사회에 의해서 종종 急進의 성격의 것으로 이해된 바 있는데 그 주된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21) 엄밀히 말하자면 期待되는 效用(expected utility)의 합이 極大化된다고 해야 옳다. 그 자체한 의미는 Lerner(1944)의 第3章을 참조하고, 리너模型을 보다 세련화시켜 均等한 分配가 더 좋음을 보인 논의를 위해서는 Bennett(1981)를 참조하라.

도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 흐름과는 달리, 功利主義的 正義觀이 무처 不均等한 분배의 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때도 있다. 벤담류의 單純한 功利主義는 각 개인의 效用(U_i)의 합을 社會的厚生의 水準(W)으로 보고 이를 極大化시켜주는 분배의 상태를 支持하게 된다. 즉 $W = \sum_{i=1}^N U_i(Y_i)$ 를 극대화하도록 주어진 總所得 \bar{Y} 를 Y_i 로 분배함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²²⁾ 그런데 이미 높은 所得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끝없는 欲望으로 말미암아 所得의 限界效用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功利主義的 原則은 이 사람에게 더욱 더 많은 소득을 분배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經濟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限界效用遞減의 法則은 특정한 물건의 소비에 대한 것이지 所得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所得의 限界效用이 遷減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며 따라서 功利主義的인 입장이 매우 偏重된 分配의 상태를 지지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現代哲學界에서 分配의 正義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온 두 巨峰이라 할 수 있는 룰즈(J. Rawls)와 노직(R. Nozick)의 分配적 정의관은 매우 큰 對照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功利主義的 正義觀에 대한 예리한 批判에 대해서만은 입장은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이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問題點은 그것의 實踐과정에서個人의 權利가 侵害될 수 있다는 점이다. 功利主義者라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富를 移轉시킴으로써 社會的 厚生이 증가된다고 할 때 그와 같은 移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改善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설사 그러한 富의 移轉이 強要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은 공리주의자에게 별 큰 의미가 없음이 분명하다. 반면에 룰즈와 노직은 이 같은 強要가 個人的 權利에 대한 侵害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自由主義의 代辯者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노직이 그와 같은 批判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다만 社會 全體의 厚生을 현저히 改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個人的 權利가 약간 침해된다 해서 어떤 政策에 꼭 반대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異議가 있을 수 있다.⁽²³⁾ 그러나 룰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그와 같은 비판을 가

(22) 이러한 형태의 功利主義의 社會厚生函數의 이론적 정당화는 J. Harsanyi(1955)에 의해 제시되었다.

(23) 예컨대 부유층에 대한 課稅를 통하여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려 한다면 어떨 것인가? 부유한 사람들의 所有權에 대한 침해가 가난한 사람들의 生存 그 자체 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가져야만 되는 것일까?

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正義의 原則 역시 個人的 權利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그의 “差等의 原則(difference principle)”은 어떤 社會의 가장 못 사는 사람을 보다 잘 살게 해주는 것이 正義로운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직(1974)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못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手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가 아니라면 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갈 뜻을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틀즈는 個人的 權利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리주의를 批判하고 있지만 결국 그 자신도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²⁴⁾

功利主義는 또한 현실적으로 不可能한 “個人間의 效用比較(interpersonal utility comparison)”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리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社會全體의 厚生이란 것은 개인간의 效用比較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厚生經濟學에서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한 이론적 결론은, 客觀的인 견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效用水準을 비교가능하게 해 주는 그 어떤 논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 뿐 아니라 공리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수 많은 사람들 조차도 그들의 學問的 著述에서, 社會評論에서, 그리고 政策處方에서 은연중에 個人間의 效用比較를 감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慣行이 理論的으로 正當化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便宜性과 實用性이란 관점에서 이를 묵인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논리의 차원에서 볼 때 功利主義가 개인간의 效用比較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功利主義의 正義觀이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았다. 무엇보다도 우선 正義로운 分配를 논의함에 있어 道德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厚生이란 개념위에 正義를 설정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대부분의 철학적 논쟁에서 功利主義를 옹호하는 사람은 항상 守勢에 몰려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功利主義에 대해서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實用性이나 現實的 呼訴力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分配政策의 基本指針을 平等性이나 個人的 權利 혹은 自由 같은 주상적인 구호에서 찾느니 보다는 社會의 厚生을 증진시킨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에서 찾는 쪽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의 영향은 ‘자연히 政策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 더욱 협조함을 보게 된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각양각색의 分配政策들, 나아가 經濟政策들이 그

(24) K. Arrow(1973)의 Rawls에 대한 비판을 참조하라.

저변에 社會厚生을 증진시킨다는 功利主義的 理想을 밀반침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 그리 큰 힘이 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III. 룰즈의 分配的 正義觀

룰즈(J. Rawls)의 分配的 正義觀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傳統的 思潮들과 조금씩 공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特色 때문에 그 중 어느 하나로 뚜렷하게 분류하기는 힘든 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正義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最小極大化의 原則(maxi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거의 모든 社會的 關心을 쏟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의 정의관이 기본적으로는 平等主義의 색채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는 모든 사람이 廣範한 의미에서의 自由에 대해 同等한 權利를 가져야 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個人的 自由가 결코 制約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自由主義的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노지(R. Nozick)과 입을 모아 功利主義下에 있어서의 個人的 權利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을 보아도 그의 강한 自由主義的 性向을 엿볼 수 있다.

한 가지 아이로니칼한 사실은 그가 곳곳에서 功利主義的 正義觀을 비판함으로써 스스로는 이와 전혀 무관함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를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功利主義者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아이로니칼한 것은 그가 功利主義에 대해 제기한 問題點들을 스스로도 모두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앞에서 공리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적한 바 있지만 個人的 正當한 權利가 침해될 가능성은 룰즈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룰즈는 功利主義가 個人間의 效用比較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될 수 있다. 그는 누가 가장 못사는 사람인가를 가려내는 일에 있어서 效用에다 그 基準을 두는 것이 아니라 “基本的인 財貨(primary goods)”의 보유량에 둘으로써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로우[K. Arrow (1973)]의 지적대로, 여러가지의 基本的인 財貨를 하나의 指標로 둡는 과정에서 룰즈도 역시 “指數의 問題(index number problem)”에 봉착하게 된다. 指數의 問題는 그 성격이나 삽작성에 있어 個人間의 效用比較라는 문제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에로우로 하여금 룰즈의 “最小極大化의 原則”과 功利主義者の “社會厚生極大化의 原則” 사이의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現代에 있어서의 分配的 正義에 관한 논의에서 룰즈의 正義觀이 그처럼 큰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 마디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우리들이 이 쳐하고 있는 經濟現實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現代의 產業社會는 한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적어도 생활에는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物質的 基盤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疏外된 階層은 있게 마련이어서 이들은 사회의 주된 흐름에서 나후된 채 豊饒속의 貧困을 맛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分配의 不平等이 야기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는 바로 이들이 겪는 고통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룰즈의 正義觀이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正義의 문제에 대해 直接的인 解答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여간 現代에 있어서의 분배적 정의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는 룰즈에서 시작하여 룰즈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正義觀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있게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1. 原初的 狀況과 社會的 契約

룰즈는 자신의 正義觀의 要諦가 “公平性으로서의 正義(justice as fairness)”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가 의미하는 바의 公平性의 특징은 社會의 基本的 構造에 관해 아무런 原則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基本原則에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는 이처럼 아무 원칙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假想的 狀況을 “原初的 狀況(original position)”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상황하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장래에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를 모르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知能이나 能力이 어느 수준일지조차 모르는 철저한 “無知의 帳幕(veil of ignorance)”의 뒤에 감추어진 사회적 상황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같이 자신의 未來에 있어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앞으로 社會의 基本構造가 될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原初的 狀況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立場에 서게 되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만 有利할 原則의 채택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아니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지조차 모른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쳐 선택된 社會의 基本的 原則은 公平한 合意 또는 妥協의 產物이라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룰즈가 의미하는 바의 公平性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原初的 狀況에서 모든 사람이 갖는 同等한 位置에 잘 나타나 있다.

正義의 原則을 이처럼 原初的 狀況에서의 合意過程에서 도출하려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롤크(J. Locke), 루소(J. Rousseau), 칸트(I. Kant) 등의 社會契約의 아이디어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正義觀이 때로는 社會契約論의 正義觀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를 規制하게 될 原則에 대해 自發的으로 合意하는 社會契約論의 狀況은 “過程에 있어서의 正義(procedural justice)”가 보장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롤즈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이처럼 過程에 있어서의 正義가 보장될 때 合理的이고 相互無關心한(mutually disinterested)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원칙은 당연히 公平할 것이며 또한 正當할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문제는 社會契約論이 배경으로하고 있는 상황이 現實的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假想의인 것이라는 데 있다. 이같은 假想의인 狀況設定의 適合性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契約論의 正義가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사니[J. Harsanyi (1975)]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롤즈의 原初的 狀況과 흡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롤즈가 도출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 社會的 契約에 동의하리란 보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미래의 일에 대한 客觀的인 確率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름대로의 主觀的인 確率을 구해낸 다음, 이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無知의 幕으로 사람들에게서 모든個人的인 情報를 박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설사 原初的 狀況을 설정하는 데까지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정말로 公平한 正義의 原則이 도출되리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울프[R. Wolff (1977)]는 롤즈가 설정한 原初的 狀況에 하나의 심각한 內的矛盾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초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將來에 대해 어떠한豫測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자기를 둘러싼 社會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울프는 이와 같은 認識의 非對稱性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롤즈는 原初的 狀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合理的思考를 통하여 社會的 契約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울프에 의하면 여기에도 論理의矛盾이 있다. 원초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모든知識을 剝奪당할 때 그는 合理的思考의基礎까지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울프는 결론적으로 원초적 상황이란 롤즈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바를 彩色하기 위한 文學的道具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原初的 狀況이 가지는 非現實性으로 말미암아 社會的 契約이 별로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遵守(compliance)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원초적 상황을 강제함으로써 끌어낸 社會의 基本原則에 현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즐겨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²⁵⁾ 롤즈가 말하는 社會的 契約이란 과거의 어느 時點에서 실제로 체결된 契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合理的으로 자신의 利益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相互利得이 될 것으로 판단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의미에서의 社會的 契約일 뿐이다. 따라서 이 계약에 아무런 制度的拘束力도 따르지 않는 터에 계약의 배경이 되는 상황마저 매우 非現實的이라고 느껴진다면 어느 누구도 계약이 요구하는 바를 순순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계약이 요구하는 바가 자신에게 損害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正義의 두 原則

롤즈는 原初的 狀況에서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리라고 기대되는 正義의 原則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自由와 兩立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의 가장 廣範圍한 自由에 대해 同等한 權利를 가져야 한다. 둘째, 社會的・經濟的 不平等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그 不平等性이 모든 사람에게 利得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 機會가 開放된 職位와 職責과 결부되어서만 不平等性이 존재해야 한다.⁽²⁶⁾

롤즈는 이 두 原則간의 관계에 대해서 첫번째 원칙은 두번째 원칙보다 優先的인 重要性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²⁷⁾ 이는 어떤 사회가 同等한 自由를 포기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經濟的・社會的 價值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自由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自由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나 과연 모든 것에 앞서는 絶對的인 位置에 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스마트[J. Smart (1978)]는 核戰爭과 같은 대규모의 慘禍를 막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의 基本的 自由를 약간 제약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 경우에도 自由가 제약된다는 점을 들어 反對하겠느냐고 묻고 있다. 하여간 이 원칙은 롤즈의 自由主義的 性向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롤즈의 平等主義的 色彩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롤즈의 正義觀의 특징을 설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두번째의 원칙 즉 “差等의 原則(difference principle)”이다. 이 원

(25) 예를 들어 D. Mueller(1979)의 비판을 참조하라.

(26) 不平等性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利得이 된다는 말에 어폐가 있는 듯이 들릴지도 모른다. 不均等性이란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27) 말하자면 兩者 사이에 마치 辭典編纂法의 選好(lexicographical ordering)와 흡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적은 일정한 條件이 만족됨을 전제로 할 때 完全히 平等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不平等性이 존재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이 條件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면 현실에서 충족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서, 룰즈가 말하고 있는 바의 正當化될 수 있는 不平等性을 현실에서 보기는 무척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利得이 되는 不平等性이어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것을 과연 현실에서 볼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즈는 이 점에 대해 과도하게 樂觀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平等한 상태에 비해 모든 사람이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된 바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짐작하기로는 職位나 職責에 따라 待遇하는 데 있어 적절한 差等을 둠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社會的 生產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렇게 더 큰 사회적 생산이 모두에게 더 많은 物質的 價值를 分配해 줄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⁹⁾ 룰즈는 나아가 이와 같은 差等이 具體的인個人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職位나 職責에 결부되어 나타나야 하며, 모든 사람이 그 직위나 직책에 대하여 同等한 機會를 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異議의 소지를 제거하였다.⁽³⁰⁾

룰즈가 이같이 과도하게 樂觀的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이유는 原初的 狀況이란 가상적 상황을 통하여 現實의 複雜性을 모두 捨象할 수 있었다는 데서 주로 찾아질 수 있다. 또한 그가 “모든 사람에게 利得이 된다”고 말할 때의 “利得(advantages)”을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로서 해석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 이유의 일환을 찾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不平等한 分配構造로 말미암아 利得을 본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이 되는 “基本的 財貨(primary goods)”의 絶對量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의 所得이나 財產이 약간 불어났다 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利得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데니얼즈[N. Daniels (1975)]나 닐슨[K. Nielsen (1978)]이 지적한 것처럼 그 결과 所得이나 財產의 偏重現象이 더욱 심화된다면 이들의 전반적 상황은 더욱 惡化될 수도 있다.⁽³¹⁾ 이와 같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룰즈가 그처럼 樂觀的일 근거는 거의 없다고

(28) 바꾸어 말하면 平等한 상태에서 파레토改善(Pareto improvement)을 통해 不平等한 상태로 변화함을 뜻하는데, 厚生經濟學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파레토改善이라는 것이 실현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29) 이와 비슷한 생각은 自由主義의 영향을 받는 保守的政治家 및 學者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0) 룰즈는 한 예로서 企業家階層이 非熟練勞動者階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는 사회구조가 비속련 노동자에게도 利得이 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31) 예컨대 이같은 不平等性이 社會主義者들이 얘기하는 바의 階級構造를 창출해낸다면 비록 가난한 사람의 所得이나 財產에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權力關係라든가 長期的인 展望의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³²⁾

3. 最小極大化의 原則

롤즈의 分配的 正義觀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한 社會의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利得이 돌아가도록 社會의 基本構造를 짜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最小極大化의 原則(maximin principle)”이 있다. 이 원칙은 말하자면 롤즈의 正義觀의 登錄商標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롤즈에 의하면 이 원칙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差等의 原則”的 한 延長이다. 어떤 職位에 우월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가장 낮은 職位에 대해 기대될 수 있는 상태도 改善된다면, 兩者 사이의 中間的인 職位에 대해 기대될 수 있는 상태도 따라서 改善된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는 바로 이 “連鎖關係(chain connection)”의 假定하에서 差等의 原則은 最小極大化의 原則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³³⁾

그러나 이 連鎖關係의 假定이 얼마나 큰 現實性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롤즈가 들고 있는 예에서만 보더라도 企業家에게 우월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非熟練勞動者에게도 利得이 가게 하기에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管理階層, 熟練 또는 半熟練의 勞動者階層에도 모두 자동적으로 利得이 돌아가리라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 연쇄관계란 가정의 현실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 差等의 原則이 갖는 설득력이 그대로 最小極大化의 原則으로 옮겨진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왜 하필이면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사회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이유를 들어 대답할 수 밖에 없다.

롤즈(1974)는 이 점에 대해 原初的 狀況에서의 사람들의 危險忌避的(risk-averse)인 태도 때문에 最小極大化가 사회의 基本原則으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의 危險에 대한 기피적 태도가 몹시 강한 것이라면 不確實性으로 충만한 原初的 狀況에서의 合理的 選擇은 일종의 安全網(safety net)을 준비해 놓고 있는 사회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게임理論의 最小極大化 戰略을 연상케 하는 이 논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³⁴⁾

最小極大化의 原則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레이 [D. Rae (1975)]는

측면에 있어 훨씬 더 큰 不利點을 안게 된다.

(32) 만약에 현실에서 롤즈의 두번째 원칙에 입각하여 正當化될 수 있는 不平等性이 존재한다면 그 不平等性的 程度는 무척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자세한 논의는 N. Daniels(1975)를 참조하라.

(33) 롤즈는 連鎖關係의 假定 이외에도 “緊密한 關聯性(close-knitness)”이란 假定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兩者的 차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筆者の 생각으로는 後者の 假定이 군더더기 같아 보여진다.

(34) 예컨대 J. Harsanyi(1975)의 비판을 참조하라.

롤즈의 원칙이 실제에 있어 가장 가난한 계층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층의 利害를 疏外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물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서 가장 못 사는(least-advantaged) 계층을 판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에로우[K. Arrow (1973)]는 롤즈가 제시한 판별방법이 가지게 될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바버[B. Barber (1975)]는 롤즈가 암묵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방법, 즉 所得에 입각하여 판별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판별과정에서 所得뿐 아니라 財產, 社會的威信, 政治的權力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중 어떤 것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가장 못 사는 계층의 프로필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³⁵⁾

4. 롤즈의 綜合的評價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롤즈의 分配的正義觀은 傳統的인 세思潮의 요소들을 모두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롤즈의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最小極大化의 原則에 함유되고 있는 平等主義의 要素일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最小限의 基本的欲求를 平等하게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平等主義의 한 구체적 형태와 근본적으로 상응하는 것이며, 또한 이 원칙의 繼續的適用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의 同等한 位置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도 平等主義의 色彩가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롤즈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 중의 하나가 自由主義의 旗手라 할 수 있는 노직(R. Nozick)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하다. 노직은 롤즈의 논의에서 正當한 權利(entitlement)의 개념이 전적으로 무시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롤즈는 差等의 原則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才能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共同財產이며 따라서 이로부터 나오는 惠澤은 모두에게 골고루 나뉘어져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직은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태어난 才能 그리고 특별한 性格등을 사회의 共同財產으로 빼고 난다면 과연 그에게 무엇이 남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들에 대한 正當한 權利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³⁶⁾

사실에 있어 롤즈는 自由主義의 要求도 적극적으로 受容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가 제시한 正義의 두 原則중 첫번째 것은 모든 사람에게 同等한 自由가 保障되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原則은 두번째의 원칙 즉 差等의 原則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원칙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自由의 保障이 平等化의

(35) R. Wolff(1977)도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비판을 가하고 있다.

(36) R. Nozick은 여기에서 J. Rawls 스스로가 功利主義를 비판하면서 人間은 手段이 아닌 目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음을 상기시키면서 Rawls도 그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추구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自由主義의 뉴앙스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는 도처에서 正當한 權利가 보호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自由主義와 平等主義의 要求를 모두 수용하려 한 롤즈의 시도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진 하되, 그것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본질상 相容될 수 없는 두 要求를 수용하려 한 노력의 결과 그의 이론은 內的矛盾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단적인 예를 첫번째 正義의 原則과 두번째 것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差等의 原則은 사람들의 타고난 才能을 사회의 共同財產으로 간주함을 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個人的 權利나 自由가 사회로 移讓됨을 뜻한다. 결국 첫번째 원칙과 두번째 원칙 사이의 相衝이 나타나는 矛盾이 발생하는 것이다. 롤즈는 두 原則 사이의 序列的(serial) 關係를 통해 첫번째 원칙의 優位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兩者의 相衝可能性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현실에서 兩者의 심각한 상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에 대한 實質的 指針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롤즈의 正義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태까지의 논의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에 강하게 共感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이 사실이다. 롤즈의 正義觀이 갖는 呼訴力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現實의 世界에 대한 樂觀的인 展望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모두에게 同等한 自由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利得이 돌아갈 수 있는 社會構造의 青寫眞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의 實現可能性은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만약 실현되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는 이 正義의 原則를 통하여 마치 유토피아와도 같은 상태로 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듯 설명하고 있다. 엄밀하게 따져 볼 때 그같은 지나친 樂觀論의 근거가 박약함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듯이 보인다. 가장 못 사는 계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正義로운 社會가 도래한다는 希望의 메시지가 주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의 社會・經濟體制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롤즈는 福祉政策이 가미된 資本主義體制 혹은 民主的인 社會主義體制가 모두 正義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急進主義者들의 비판적인 말과는 달리 資本主義體制의 骨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正義로운 사회의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파함으로써 보다 穩健하고 現實性있는 방법을 통해 社會改革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원칙이 요구하는 바대로 市場經濟의 基盤을 유지함으로써 經濟的인 誘因을 온존시키고 동시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쏟는다는 일은 資本主義의 틀 안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다. 롤즈가 自由主義와 急進主義의 양쪽에서 신랄한 批判의 대상이 되어 오면서도 많은 사람의 共感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樂觀的 展望에 그 주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³⁷⁾

IV. 哲學과 經濟學

보다 바람직한 分配의 상태를 가져 오기 위해 사회의 基本構造를 改革하는 일은 政治家나 行政家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지, 哲學者나 經濟學者 같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은 자연히 理想主義의 경향이 강하고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학자라 하더라도 哲學者와 經濟學者가 문제를 보는 視角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철학자들은 여태까지 보아 온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原則에 의해서 分配되는 것이 正義로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나머지, 그 원칙의 實現可能性이라든가 그 원칙을 실행에 옮기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는 별로 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經濟學者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히려 實現可能性이라든가 效率性과의 相衡問題 등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視角의 차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차이로 말미암은 有用한 分業의 가능성성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經濟學者의 임무는 哲學者와 實務에 종사하는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橋梁의 역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학자들의 原則的이고 抽象的인 논의를 實現性있고 具體的인 아이디어로 바꾸어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行動指針으로서 제시하는 일이다.

철학자와 경제학자 사이에 視角의 차이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分配의 狀態를 지칭하는 用語의 使用을 예로 들 수 있다. 哲學者가 강조하는 것인 “正義로운(just)”分配임에 비해 經濟學者는 “公平한(equitable)”分配를 강조한다. 물론 양자의 본질적 내용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나 미묘한 뉴앙스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正義로운 분배라 할 때 생각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태가 先驗的으로 올바른 것이며 만약 이 상태가 올바른 것이라면 다른 상태는 그른 것이 되는, 밀하자면

(37) R. Wolff(1977) 같은 사람은 이러한 롤즈의 입장이 自由主義의이며, 福祉國家의인 資本主義體制(liberal welfare-state capitalism)를 위한 哲學的 辯明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排他的인 성격을 상정하게 된다. 그에 비하여 公平한 分配라고 한다면 先驗的 論理보다는 사람들의 느낌이나 認識이 보다 중시되며,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排他的 성격보다는 程度의 差異가 강조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³⁸⁾ 결국 어떤 分配의 原則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얼마나 實現 possibility이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經濟學者의 입장은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公平한”分配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公平한 分配의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그 基礎가 되는 正義로운 分配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哲學界가 한가지로 통일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러한 결과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는 별 이의가 있을 수 없겠으나 경제학자의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正義로운 分配에 관해 하나로 통일된 基本骨格을 철학자로 부터 제시받았었다면 경제학자는 단순히 여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만을 수행했으면 되었을 것이다.⁽³⁹⁾ 그러나 너겟 별의 서로 다른 基本骨格을 가지고 그 중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적당히 짜맞추어 公平한 分配의 기본틀을 만들어내는 어려운 작업이 經濟學者에게 맡겨진 셈이다.

좋든 싫든 간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學問的 現實이며 따라서 經濟學者는 자신의 기준에 의거하여 公平한 分配의 基本骨格을 짜맞추는 일에 차수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經濟學者는 直觀主義的 接近方式에 대해 哲學者만큼 까다로운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논리의 엄격성을 너무 따지는 나머지 折衷主義的 태도를 배격하는 철학자의 전철을 밟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다.⁽⁴⁰⁾ 經濟學者의 주요한 관심사가 어차피 보다 實現 possibility이 높고, 效率性의 損失등 부수적인 문제점을 적게 일으키며, 많은 사람의 支持를 받을 수 있는 分配原則의 定立에 있다고 한다면 直觀에 의존하는 折衷主義的 接近方式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正義觀을 명백히 선택하여 公平한 分配의 原則을 모두 이로부터 도출하려 한다면 論理의 一貫性이란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實現 possibility이나 支持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 制約이 를 것으로 생각된다.

折衷主義的 接近方式은 여러가지의 公平한 分配의 基本構圖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그

(38) 이와 같은 經濟學者的인 公平한 分配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논문으로서 E. E. Schokkaert and L. Lagrou(1983)를 참조하라.

(39) 그러나 이같이 단순하게 느껴지는 일조차도 결코 쉽지는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A. Rivlin(1975)은 Rawls의 分配의 正義觀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이를 現實的인 政策에 접합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0) 哲學者の 그러한 엄격성은 결국 “무엇이 正義로운 分配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統一된 답을 내는 데 실패한 주요원인이 되었음을 상기하라.

중 하나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財產權을 보장하고 市場經濟의 原理가 자유로이 작용하는 경제의 기본골격을 갖춘다. 만약 이와 같은 기본골격하에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貧困이 창출된다면 이들에게 최소한의 人間的인 生存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적절한 支援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 불필요하게 많은 富가 少數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결과가 생겨 그 富의 일부를 대중들에게 再分配함으로써 전반적인 社會厚生의 改善이 기대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再分配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再分配는 慷意的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되고 적절한 公共選擇過程을 거쳐 선택된 規則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自由主義에 토대를 두고 平等主義와 功利主義의 요소를 적절히 가미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⁴¹⁾ 그러므로 이 같은 基本構圖가 갖는 너무 강한 自由主義의 색채에 거부반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측면이 보다 강조된 代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生產手段의 社會的 保有라는 기초위에 다른 여러 요소들이 가미된 構造도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平等主義의 요소를 보다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例들은 상이한 正義의 原則들을 결충하는 방법 그 자체도 여럿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결충하든간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 사항이 지켜져야만 설득력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正義에 관한 여러 思潮중 어떤 것도 절적으로 跛外시켜서는 안되며 各思潮가 요구하는 바의 最小限은 반영시키고 있어야만 公平한 分配의 원칙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個人的 權利나 自由가 명백하게 침해될 수 있다든가, 平等性에의 意志가 결여되어 있는 분배의 원칙은 公平한 분배의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또한 物質的 價值를 분배함에 있어 받을만한 資格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은 各思潮의 特性 혹은 強點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남들이 가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公平한 分配라 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두 가지의 侧面이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각각의 侧面에 어떤 正義觀에서 추출된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公平한 分配에서 첫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사회 전체의 物質的 價值가 構成員 사이에서 얼마나 고르게 나뉘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즉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

(41) 동시에 “받을 만한 資格(desert)”이란 요소도 적절히 가미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의 格差가 얼마나 큰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로 偏重되어 있는가가 公平性의 첫번째 次元이 된다. 두번째의 측면은 누가 많이 가진 자가 되어야 하며 누가 적게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가의 구분이다.⁽⁴²⁾ 能力도 없고, 努力도 하지 않으며, 특별한 必要도 인정될 수 없는 사람이 많은 經濟的 資源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분배를 公平하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不正한 방법으로 蕊財한 사람들이 분배상의 上位階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시 말해 公平한 分配의 原則으로서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더불어 누구를 分配序列上의 어떤 位置에 갖다 놓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⁴³⁾

우리가 여태까지 고찰한 여러가지의 正義觀中 公平한 分配의 첫번째 측면에 특별한 適合性을 가진 것은 平等主義와 功利主義라고 볼 수 있다. 兩者가 내리고 있는 결론의 내용은 같지 않을는지 몰라도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배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할 것이다. 이에 비해 自由主義나 받을만한 資格을 중시하는 正義觀은 얼마나 고르게 나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副次的인 관심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 대신 이들은 두번째 측면 즉 누가 어떤 位置를 차지해야 하느냐에 특별한 적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平等主義나 功利主義는 이 점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思潮의 特性을 적절히 取捨選擇함으로써 公平한 分配의 原則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分配的 正義觀이 항상 對立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公平한 分配의 原則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 相互補完的인 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 예를 自由主義와 平等主義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自由主義의 要求를 너무 충실히 따르다 보면 富의 偏重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비록 個人的 權利와 自由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원벽하게 충족되고 있다 할지라도 富의 偏重이 너무나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를 公平한 分配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때 平等主義의 요소를 적절히 가미하여 富의 偏重에 어떤 限界를 설정해 놓는다면 公平한 分配로서의 설득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 平等하게 分配되어야 한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나머지 사람

(42) 經濟學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不平等度指數(inequality index)는 첫번째 측면에서의 不平等性 혹은 不公平性을 측정할 수 있을 뿐 두번째 측면에 관해서는 아무런 측정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不平等度指數가 가지고 있는 限界이며 指數上의 變化와 사람들의 느낌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43) 이와 같은 요구는 公平한 分配의 경우 뿐 아니라 哲學에서의 “正義로운 分配”를 위해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分配의 正義에 관한 논의는 이 점에 대해 명백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들의 正當한 權利와 自由가 무시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음을 목과하는 경우에도 公平性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自由主義의 要素를 가미하여 最小限의 基本權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兩者의 相反되는 듯이 보이는 요구를 적절히 調和시켜 하나의 弱點을 다른 것의 強點으로 補完시킴으로써 公平한 分配의 원칙으로서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正義로운 分配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하는 哲學者들의 노력이 별로 큰 成果를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公平한 分配의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經濟學者가 거둔 성과는 더욱 초라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 成果를 논하기 이전에 經濟學者の 경우에는 아예努力 그 자체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철학자들에 의한 正義로운 分配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公平한 分配의 原則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경제학자의 연구결과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데 불과할 뿐이다. 경제학자는 이 문제에 관해 철학자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태도를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강조한 바 있지만 公平한 分配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正義로운 分配의 개념에서 도출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兩者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다. 兩者사이에는 상당히 중요한 質的 差異가 존재하며 따라서 公平한 分配의 原則은 經濟學者の 獨自의 노력에 의해서만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V. 맷 음 말

보다 公平한 社會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各 階層의 利害關係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政治的 過程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 調整過程은 각자의 利害關係와 적절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침례한 社會的 對立을 보게 될 때가 많다. 따라서 社會의 構成員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公平性의 原則을 마련해 놓고 이에 입각하여 調整의 작업을 진행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만 公平한 社會의 구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公平性의 原則은 단순한 느낌의 次元을 넘어서는, 客觀的이며 明瞭한 基準을 뜻한다. 우리는 그 답을 우선 哲學者들의 正義에 관한 논의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철학자들은 문제의 核心으로 거슬러 올라가,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가 구현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몇가지의 基本的 要件들을 찾아 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이러한 기본적 요건들이 모두 동시에 그리고 손쉽게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는 데 문제가 있었다. 결국 각각의 기본적 요건이 가지는 중요성에 따라 優先順位를 매기고 이에 입각하여 選擇的으로 총족시키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든 것이 현실의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 論文에서 여태까지 고찰해 온 여러가지의 正義觀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이 優先順位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哲學者는 우리에게 어떤 優先順位가 가장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만 이에 대한 多樣한 見解만을 접하고 있을 뿐이다. 철학자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지만 문제의 속성상 애초에 그것을 기대하기도 힘든 일이었는지 모른다. 複雜하게 얹혀있는 우리의 經濟生活과 이에 대한 우리의 多樣한 價值判斷은 正義로운 分配에 대한 意見의 一致를 쉽사리 허용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일단 正義로운 分配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이들 사이에 어떤 優先順位 비슷한 것을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몇가지 예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최소한도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經濟學者에게는 哲學者가 제시한 正義의 原則을 좀 더 현실성있게 再構成함으로써 分配政策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公平한 分配의 原則를 정립하는 과업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公平한 분배의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경제학자의 노력도 과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담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原則의 不在狀態가 分配問題를 둘러싼 理念的混亂과 社會的葛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경제학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努力 그 자체가 不足했음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된다. 公平한 分配의 原則으로서 이렇다 할만한 것이 제시된 바 조차도 없었음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經濟學界도 獨自의 公平한 分配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우리 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分配의 現實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平等化에의 要求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거의 모든 實證的研究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 분배상태가 지속적으로 改善되어 왔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平等化에의 要求는 점점 더 거세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여러가지의 설명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筆者는 分配的 正義와의 연관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그 정곡을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正義로운 分配 혹은 公平한 分配에는 두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하나는 富가 얼마나 고르게 分配되어 있으나이며, 다른 하나는 누가 얼마나

많은分配를 받고 있느냐와 관련된다. 不平等度指數는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첫번째 측면에서의改善與否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두번째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다. 不平等度指數의 변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기존의 실증적 연구는 결국 이 두번째 측면에서 발생한變化를 간과했기 때문에現實과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社會에 있어서의分配現實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分配的正義의觀點으로부터再照明해보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經濟學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강렬한平等化에의要求를 목격하고 우리의 경제학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몇몇 경제학자들은實證的研究의 결과가 지속적인分배상태의改善을 보이고 있음을過信하고平等化를 외치는 국민들의부르짖음에冷笑的인태도를 보여왔다. 다른 몇몇 경제학자들은平等化를 위한 의침에평등하여論理의뒷받침없는 막연한當爲論만을반복하기도하였다. 그러나公平한分配의明白한原則을 제시하고 이에입각하여우리의現實을냉철하게分析해보려는試圖는지극히드물었던것이사실이다. 지금우리學界에서볼수있는主流經濟學에대한점증하는懷疑와批判이이러한현실과무관하지않다고생각한다. 멀어진信賴를回復하고보다公平한社會의구현에무언가공헌하기위해서우리經濟學者들은우선正義로운分配또는公平한分配의實體를찾아내기위한省察의작업으로부터다시출발해야한다고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Arrow, K., "Some Ordinalist-Utilitarian Notes on Rawls' Theory of Justice," *Journal of Philosophy*, Vol. 70, 1973:254-63.
- Arrow, K., "Nozick's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Philosophia*, Vol. 7, 1978:265-79.
- Arthur, J., and Shaw, 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8.
- Atkinson, A. (ed.), *Wealth and Income Inequality*,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Barber, B., "Justifying Justice," in N. Daniels (ed.), *Reading Rawls*, New York: Basic Books, 1975.
- Bennett, J., "The Probable Gain from Egalitarian Redistribution," *Oxford Economic Papers*,

- Vol. 33, 1981:165-9.
- Blinder, A., "The Level and Distribution of Well-Being," in M. Feldstein (ed.), *The American Economy in Transi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0.
- Boadway, R., and Bruce, N., *Welfare 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1984.
- Bowie, N., *Towards a New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1.
- Cohen, G., "Robert Nozick and Wilt Chamberlain: How Patterns Preserve Liberty,"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Daniels, N. (ed.), *Reading Rawls*, New York: Basic Books, 1975.
- Daniels, N. (ed.), "Meritocracy,"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Edgeworth, F., "The Pure Theory of Taxation," *Economic Journal*, Vol. 7, 1897:40-70, 226-38, 550-71.
- Frankena, W.,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in R. Brandt (ed.), *Social Justic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2.
-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Hagenaars, A., *The Perception of Poverty*, Amsterdam: North-Holland, 1986.
- Hare, R., "Justice and Equality,"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Harsanyi, J., "Cardinal Utility in Welfare Economics and in the Theory of Risk Tak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1, 1953:434-5.
- Harsanyi, J., "Cardinal Welfare, Individualistic Ethics and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3, 1955:309-21.
- Harsanyi, J., "Can the Maximin Principle Serve as a Basis for Morality?: A Critique of John Rawls's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9, 1975:594-606.
- Hayek, F.,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La Follette, H., "Why Liberalism Is Mistaken,"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Lerner, A., *The Economics of Control*, New York: Macmillan, 1944.
- Lessnoff, M., "Capitalism, Socialism and Justice,"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Mack, E., "Liberty and Justice,"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Mill, J.,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edited by W. Ashley), London: Longmans, 1921.
- Mueller, D., *Public Cho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Nielsen, K., "Class and Justice,"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 Rachels, J., "What People Deserve,"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Rae, D., "Maximin Justice and an Alternative Principle of General Advanta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9, 1975:630-47.
- Rawls, J., "Justice as Fairness," *Journal of Philosophy*, Vol. 54, 1957:653-62.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Rawls, J., "Some Reasons for the Maximin Criter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4, 1974:141-6.
- Rivlin, A., "Income Distribution—Can Economists Help?",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1975:1-15.
- Schokkaert, E., and Lagrou, L., "An Empirical Approach to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1, 1983:33-52.
- Sen, A., "The Impossibility of a Paretian Liber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8, 1970a:152-7.
- Sen, A., *Collective Choice and Social Welfare*, San Francisco: Holden-Day, 1970b.
- Sen, A., "Utilitarianism and Welfarism," *Journal of Philosophy*, Vol. 76, 1979:463-89.
- Sen, A., *Choice, Welfare and Measurement*, Oxford: Basil Blackwell, 1982.
- Sen, A., and Williams, B. (ed.), *Utilitarian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Singer, P., "Rights and the Market,"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Smart, J., "Distributive Justice and Utilitarianism in J. Arthur, and W. Shaw (ed.),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Smart, J., and Williams, B., *Utilitarianism: For and Again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Vlastos, G., "Justice and Equality," in R. Brandt (ed.), *Social Justic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2.

Wolff, R., *Understanding Raw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김우창 편, 『정의와 복지화』, 문학예술사, 1985.

최명관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아리스토텔레스), 서광사, 1984.